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명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공사명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위치 :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독립문 문화공원)
- 규모 : 지하1층 ~ 지하3층(6,080.88㎡)
- 시공사 : 동아건설산업(주), 대룡건설(주)
- 공사비 : 14,295,934,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 2021.12. ~ 2023.12.(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점검대상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비고 (횟수)
	1차	2차	
지하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023.01	퇴매우기 완료후 2023.06	2회
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2022.10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2022.11	2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2023.03	타설 단면이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2023.06	2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022.11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2023.01	2회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대)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2023.03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023.06	2회
총 횟수			10회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년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안전점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 18,000,000원 (금일천팔백만원)

5. 참가자격(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토목과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2022.8.4.)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9.23.(금) ~ 2022.9.29.(목) 18:00

나.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청 토목과 (토목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 토목과)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jewido825@sdm.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식 일체(붙임2)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서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서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8. 기타사항

-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 다. “나”항에 의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 및 점검 횟수의 변경 등으로 점검비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사. 수행기관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에 게시합니다.
- 자.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토목과 담당자(02-330-1770, jewido825@sdm.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신청서식 일체.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예정공정표. 1부.